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136호]

「 육아휴직 대체인력 총원을 위한 」

2024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참신하고 의욕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 근무장소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일 | 근로시간 | 급여 및 복지 수준 |
|------------|----|------------------------------------|-------|----------------------|--|
| 한석봉 체육관 | 1명 | 2024. 11. 18. ~ 2025. 6. 30. | 월 ~ 금 | 일 8시간 / 주 40시간 | - 월급: 2,238,390원(가평군 생활임금) ※ 2025년도의 경우 가평군 생활임금 적용 - 기타 복지 1. 복지포인트 월25,000원 2. 명절휴가비 각 500천원(설·추석) |

※ 주요직무: 고객응대 및 환경정비 등

※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연장할 경우 채용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 휴일 및 근무시간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임금지급: 월급(월 1회, 익월 10일 이내 지급)

■ 기타사항: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수당 및 휴가 부여

2. 채용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 자격기준

| 구 분 | 자격기준 |
|-----|--|
| 공통 | <p>「아래 공통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 봉: 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0세 이하2. 거주지: 공고일 1일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 결격 사유

| ○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 제11조(기간제 근로자의 자격제한)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6의2. 공단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6의5.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 우대 사항

| 자격 사항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 |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

※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될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가지 이상의 가산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중 유리한 가산점수 1가지만 적용됩니다.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

■ 우대사항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시 제출)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원본제출, 보훈관청 발급) |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원본제출, 시/군/구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발급)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원본제출, 통일부 또는 시/군/구 민원실 발급) |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한 가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원본 제출) |
| 의상자 및 의사·상자 배우자 및 자녀 | 본인- 의상자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상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시/군/구 민원실 발급)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제출,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시/군/구 민원실 발급) |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원본제출,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시/군/구 민원실 발급) |

3. 채용일정

| 추진 일자(기간) | 추 진 내 용 | 비고 |
|-----------------------|----------------------|-----------------|
| '24. 10. 28. | 채용 공고 |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
| '24. 10. 29. ~ 11. 7. | 원서 접수 | 방문접수 또는 e-mail |
| '24. 11. 8. | 서류접수 결과발표, 면접시험 일정공고 |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
| '24. 11. 12. | 서류전형 적격심사: 13:30(예정) | 한석봉체육관 지하1층 |
| | 면접시험: 14:00(예정) | 한석봉체육관 지하1층 회의실 |
| '24. 11. 13.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

※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0. 29.(화). ~ 11. 7.(목) / 09:00~18:00(점심시간, 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e-mail(blueddol@gpfmc.or.kr)
- 접 수 처: 한석봉체육관 2층 사무실(가평읍 문화로 153번지)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2. 직원 채용시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가점 서류(붙임 참조) / 해당자에 한함. |
| 면접(당일) 시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2. 기타 응시자격 증빙자료 |

※ 구비서류는 반드시 공단 소정(채용공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공단 홈페이지(www.gpfmc.or.kr) → 알림방 → 2024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5. 채용절차 및 방법

■ 채용절차

- 1) 1차 서류심사: 응시 자격 기준 부합 여부 심사(적격 여부)
- 2)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 면접심사 평가항목: 50점 / 각 항목 당 10점 만점

| 평가항목 | 평가 점수 | 심사 기준 | | | | | 비고 |
|----------------|----------|----------------|-------------|-------------|-------------|---------------|----|
| | | 매우우수 (9~10) | 우수 (7~8) | 보통 (5~6) | 미흡 (3~4) | 매우미흡 (1~2) | |
| 합계 | 50 | | | | | | |
| 고객지향 및 공익추구 자세 | 10 | | | | | | |
| 창의성 | 10 | | | | | | |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10 | | | |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10 | | | | | | |
| 직무 전문성 | 10 | | | | | | |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보통(3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미흡(4점) 이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동점자 발생 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합격기준) 제3항에 따름

※ 주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으로 응시자의 개인 신상 밝힌 금지(친·인척 중 유명인사 또는 고위직,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학력, 사회경력 등 의도적 전달 행위)

■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 100%(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 채용 결과 발표 후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제도에 의한 추가 채용

■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

- 추진근거: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
- 최종결정: 공단의 내·외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장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
- 인원규모: 상위 2명
- 적용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 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www.gpfmc.or.kr)채용 공고 발표

6. 고용의 해고

- 최종 합격 후 근무태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시행내규 제47조(고용의 해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의 해고가 될 수 있음.
1.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출·퇴근 시간 및 근무태도의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지적 당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1월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의 운영에 손해를 끼친 때
 5.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여 입사하거나 직위(급)을 사칭한 때
 6. 사회통념상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공금의 횡령·유용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때(금액의 제한은 없음)
 8.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9. 허가 없이 공단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집회 등에 참여한 때
 10.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
 1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1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13. 근무지변경 등 업무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종 한 때
 14.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
 15. 형사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6.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
 17.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8. 공단 취업규정 제11조를 위반 하였을 때
 19.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7. 기타 유의사항

- 인사청탁, 제출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후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합니다.(채용 여부가 확정 된 날 이후 90일까지 청구 기간이며 청구 시 14일 이내 반환됨. 비용발생 시 본인부담.)
-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우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인 합격인원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자(☎031-8078-8041)